

공동 CMS 이용계약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공동 CMS(이하 “CMS”라 한다) 이용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CMS”를 “을”이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전제조건) ①본 계약은 “을”이 금융결제원의 CMS이용승인을 득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하며, 만일 “을”이 그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취소된다.

②본 계약은 “을”이 금융결제원의 “CMS이용약관”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하며 “CMS이용약관” 불이행에 따라 이용승인이 해지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제3조(서비스 이용범위) “을”이 이용하는 “CMS”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업무구분		업 무 내 용	희망여부(인)
대량자 금 이체업 무	출금이체 (3일)	각종 수납자금을 “을”의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을”의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	
	출금이체 (당일)	각종 수납자금을 “을”의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을”의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	
	입금이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자금을 “을”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	

제4조(계좌의 지정) ①“을”은 본 업무처리에 필요한 예금계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업무구분	계좌번호	예금주명	비고
출금이체			
입금이체			

②제1항의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을”은 그 내용을 “갑”과 금융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과 금융결제원이 그 변경내용에 대한 전산등록을 마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고객수수료) ①“을”은 “CMS”를 이용하는 대가로 다음과 같이 “갑”에게 고객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출금이체금액 입금시 고객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한다.

만일 출금이체금액보다 고객수수료가 많을 경우 “갑”은 별도의 예금청구서 없이 제4조 제1항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인출하기로 한다.

구 분		의뢰건당 수수료	이체건당 수수료	비 고
고객수수료	출금이체(3일)			
	출금이체(당일)			
	입금이체			

②“갑”이 계약기간 내에 제1항의 고객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은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2항의 변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행일 14일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제6조(계약기간) ①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②“갑”또는 “을”이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지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을”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금융결제원에 CMS 이용승인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을”이 서비스이용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을”이 CMS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을”에게 기업파산, 해산, 청산, 관리, 재조정, 구조조정, 화의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②제5조 3항에 의거 “을”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지한다.

③“을”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객수수료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시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갑”에게 아무런 답신이 없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준용)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결제원과 CMS 참가은행이 별도로 정한 CMS관련 규정, CMS이용약관 및 전산처리 기본설계서에 따른다.

제9조(합의관할) 본 계약에 관해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갑”또는 “을”의 주소지 관할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인)

(을) (인)